어항어촌 어떻게 개발돼야 하나

미래지향적 투자 개발방향으로 재점검돼야

어항은 어촌의 중심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어장-어촌의 연계를 위한 주변기능시설, 정주시설 및 어촌복지문화시설과의 연계는 물론 상위개념의 어항해역개발 및 국토개발계획하의 특화된 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 어촌의 관행적 생계어업을 지원하고, 어촌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관광 학습, 레저, 휴양공간 기능의 지원시설로서 간이 선착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춘 어항일 경우 친수성과 안정성 및 지역별 특성화가 강조된 시설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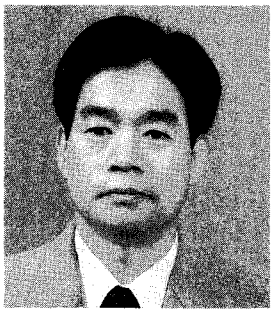

류 청 로
〈부경대학교 교수〉

어항! 어떻게 개발되나

요즈음 어항, 어촌, 수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 필자의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중에 어촌, 어항 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의 보고서를 접할 때, 혹은 조금이라도 올바른 계획, 올바른 어촌 어항의 미래상이 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들을량치면 무척 반갑다. 최근 권역별로 어촌 어항을 개발하는 움직임만 해도 그렇다. 예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인 것만 같았고 말로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어촌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촌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점에 큰 기대를 해본다. 또 이러한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권역별 어촌의 어항개발 실태를 살펴보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생각한 바를 이하 서술해 보고자 한다. 또 어항을 개발하는데에 있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

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약간 서술하기로 한다.

권역별 어촌의 어항이용·개발 실태 및 문제점

권역별 어촌개발을 위해 설정한 권역 내의 어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어항을 제외한 소규모 어항(포구), 선착장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제1종과 제3종 어항을 거점기능의 어항으로 본다면, 권역별 어촌의 어항은 간이어항 또는 출어준비, 휴식, 어구수선 등의 대단히 특수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는 어항, 또는 선착장 생산의 장 학습의 장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서·남해안의 어촌종합개발, 권역별 어항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표적인 권역을 조사대상으로 기본 계획과 추진과정 등을 분석 검토하여 어항개발의 실태를 종합분석해보면, 어촌종합개발 대상 권역별 어항은 소규모 어항으로 어촌 수산업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어항보다는 보조기능 간이시설로서의 어항기능이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거점어항의 부속기능 또는 권역어촌의 특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어항기능 활성화가 계획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의 형성, 수산업의 발달, 해양문화의 창달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제1종, 제3종 및 제2종 어항 등 기존 거점어항의 항세권 및 개발 방향과의 연계, 즉 상위 계획 하의 소권역 어항, 간이 시설등 기능분담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며, 어촌개발권역내의 어촌계별 배분식 시설비투자 등의 문제가 대부분의 권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ii)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아래 선정된 권역내의 중점어항 기능과 보조어항 간이어항 등 기능분화 및 이 기간시설을 이용한 어촌별 특화가 필요할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방파제 연장, 물양장 시설, 호안시설 및 접속도로의 건설에 한정되어 어촌 종합개발이라기보다는 최저수준의 기본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iii) 어촌의 사회기반시설로서 방파제 호안 물양장 등 어항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도 권역내의 향후 기능분담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시설물 형식, 구조 및 건설방법이 고안 적용되어야 어촌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의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나, 표준화된 듯한 시설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많다.

iv) 일부 권역의 어항시설 투자계획은 어항개발관련 투자의 집중과 기존 거점어항과의 기능분담을 비교적 잘 고려하여 모범적인 투자 개발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친수성 및 접근성, 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어항시설물 설계 건설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어항기능을 달성하기에 급급한 개발보다는 미래지향적 투자개발방향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촌·어항개발의 기본과정은 상위개념의 국토개발계획, 도시지역개발계획 아래 어항이 중심이 되는 어촌·어항의 자연, 사회, 문화, 경제적 제반조건을 조사하고, 미래의 개

> 어촌·어항개발의 기본과정은 상위개념의 국토개발계획, 도시지역개발계획 아래 어항이 중심이 되는 어촌·어항의 자연, 사회, 문화, 경제적 제반조건을 조사하고, 미래의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개발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개발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항·어촌개발의 계획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권역별 어촌의 어항 및 어항 배후지 개발은 어항의 위상·기능에 따라 즉 권역거점어항(제1종, 제2종, 제3종 어항), 특화어항 간이어항에 따라 어항 기본시설·기능시설 및 배후지 이용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② 어촌·어항의 종합기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어항·어촌시설배치는 단위어촌계, 단위권역의 개발과 거점어항 및 도시어항의 체계화를 전제로 한 어촌 어항개발 관련 시설의 종합 연계기능 극대화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시설개발이 계획되어야 한다.

③ 어항은 어촌의 중심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어장-어촌의 연계를 위한 주변기능시설, 정주시설 및 어촌복지 문화시설과의 연계는 물론 상위개념의 어항 해역개발 및 국토개발계획하의 특화된 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개발법, 관광특구 등 지역에 따른 개발 보전관련 특별법 등과 항만법, 어항법, 수산업법, 해양환경보전관련법 등 해역이용관련 법·제도하의 권역별 어촌개발계획이 법·제도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법·제도적 조정과정을 통해 권역화된 어촌이 거점어항과 연계되어 기능이 확대되도록 개발방향

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이는 건전한 어촌, 정주어촌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⑤ 권역별 어촌개발사업이 관주도형의 사업으로 주민이 진정한 어촌개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유도책을 마련 또는 주민에 의한 미래 어촌의 설계 및 어항개발의 비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각 어촌의 어항개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서술해 본다.

어촌의 해역특성 및 어업형태에 따른 어항개발

어업형태에 따른 어항개발

기 설정된 어촌개발 권역중에서 ① 대도시 항만(어항) 및 거점어항을 포함

하는 소규모어항의 조합, ② 소규모 어항 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주 취급대상 수산물에 따라 해상양식의 지원시설, 연안어선형 어업의 지원, 양식과 연안어업 혼재형, ④ 해양성 휴양·레저기능 중심 및 혼합형 등 다양한 시설 기능으로서의 어항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i) 양식어업의 중심 어항

양식생산물을 채취하역하고 처리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작업장, 하치장 등의 공간과 양식생물에 따라 효율적인 하역장비 등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 어·패류 등 생물취급의 편의공간 즉, 축양시설 등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가공 처리시설이 완비된 어촌 같으면 어항(하역장)을 재료공급부두 또는 재료공급을 공정화 하는 일체식 공장부두화가 가능하다. 주요 취급생물의 유통 가공 공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식생산 자체의 공급 제작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화가 필요하다.

ii) 어선어업의 중심어항

어선어업의 중심어항은 일반적으로 거점어항일 경우가 많다. 이는 전술한 일반적인 어항 기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권역별 어촌개발사업과 같이 간이 계류시설 등의 기능을 갖는 어촌의 소규모 어항일 경우는 출어준비 등에 필요한 어구 수선공간 휴식공간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iii) 특수기능의 권역내 간이어항

어촌의 관행적 생계어업을 지원하고, 어촌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관광 학습, 레저, 휴양공간 기능의 지원시설로서 간이 선착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춘 어항일 경우 친수성과 안정성 및 지역별 특성화가 강조된 시설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 어업, 전통적 수산 시설물 어선 어항시설 등을 보전하는 문화적 친수공간의 개발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기능에 따라 또 주 취급 수산물 특성 및 선형에 따른 어항의 규모, 구조형식, 배치 등의 특화가 필요하며, 이는 해양환경특성 및 어항기능 연계시스템하에서 종합적인 시설규모, 배치계획이 조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 특별한 검토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에 따라 또 주 취급 수산물 특성 및 선형에 따른 어항의 규모, 구조형식, 배치 등의 특화가 필요하며, 이는 해양환경특성 및 어항기능 연계시스템하에서 종합적인 시설규모, 배치계획이 조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 특별한 검토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역특성에 따른 어항개발

어항주변 해역의 해양특성에 따라 서해안과 같이 해저경사가 완만하고 갯벌이 발달한 지역, 동해안과 같이 파랑에 노출되고 연안표사이동이 활발한 지역, 남해안과 같이 해만이 발달한 지역 등에 따라 구조형식 및 어항 개발의 기본개념을 재정립하여 기능 극대화에 주력하여, 해역특성에 적합한 어항 및 구조물의 장기적 개발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어항기능의 연계 및 시스템의 구축

권역내의 중심어항과 간이어항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태풍시의 피항 등 재해방지를 위한 어항과, 생산기반시설로서의 어항 및 선박계류 출어·보급 및 기타 편의기능 시설 등 중심 시설기능에 따라 어항이 차별적으로 개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능에 따른 어항의 기본형상, 구조물의 형식 적용 예를 제시하여 검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초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